

2018년도 제5회 인천교통공사 업무직 공개경쟁 채용 공고

인천교통공사에서는 업무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0월 31일

인천교통공사인사위원회 위원장

1. 채용분야 및 담당직무

가. 채용분야

| 채용분야 | 채용직급 | 채용예정인원 | 담당업무 | 근무지 | 월평균보수 |
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
| 합 계 | | 60명 | | | |
| 시설관리원 (청소) | A형 | 무기업무직 12명 | 시설물 청소 | 인천 | 168만원 |
| | B형 | 무기업무직 10명 | 시설물 청소 | 인천 | 168만원 |
| 시설관리원(전기) | 무기업무직 | 2명 | 시설관리 | 인천 | 217만원 |
| 시설관리원(기계) | 무기업무직 | 2명 | 시설관리 | 인천 | 217만원 |
| 콜택시 운전원 | A형 | 무기업무직 16명 | 장애인콜택시 운전 | 인천 | 180만원 |
| | B형 | 무기업무직 1명 | 장애인콜택시 운전 | 강화 | 180만원 |
| 버스관리원(운전·노선) | 무기업무직 | 13명 | 버스운전·노선관리 | 인천 | 280~300만원 |
| 승강대관리원 | 무기업무직 | 1명 | 승강대 유지관리 | 인천 | 190만원 |
| 버스정비원 | 무기업무직 | 1명 | 버스정비 | 인천 | 185만원 |
| CNG충전원 | 무기업무직 | 1명 | CNG충전 | 인천 | 190만원 |
| 의정부관리원 (운영요원) | 기간제업무직 | 1명 | 현장장애 초동조치 (열차수동운전 취급), 고객응대 | 의정부 | 220만원 |

※ 월평균 보수 : 세금 공제전 금액(실적급, 연차수당, 성과급 등 제외)이며 실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음.

나. 담당직무

| 분 야 | 주 요 업 무 |
|--------------|---|
| 시설관리원(청소) | · 시설물 내·외부 청소 및 전동차 청소 · 대합실, 승강장 등 지하철 역사 청소 · 버스 차고지 내외부 청소 등 |
| 시설관리원(전기) | · 조명제어장치 관리, 램프·안정기 보수 교체 및 폐자재 처리 등 · 시설물 유지관리 |
| 시설관리원(기계) | · 오수 및 폐수처리시설과 폐기물 보관시설 유지관리 · 시설물 유지관리 |
| 콜택시운전원 | · 콜택시 이용고객 수송 및 교통약자 안내 업무 · 차량의 유지, 정비, 보수 업무 · 차량운행에 관련한 일체의 업무 |
| 버스관리원(운전,노선) | · 운행법규를 준수한 차량 안전운행 · 승객응대 등 승객편의 제공 · 운행 관련 민원 및 사고 조치 등 |

| 분 야 | 주 요 업 무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승강대관리원 | · 버스승강대 및 버스승차대 청소 및 유지보수 관리 |
| 버스정비원 | · BRT, GRT, 준공영 버스 정비 |
| CNG충전원 | · CNG충전 및 CNG충전 시설 유지관리 |
| 의정부관리원 (운영요원) | · 전동차 비상운전 및 응급조치 · 비상출동차량 운전 · PSD, 신호설비, 전력공급장치 응급조치 등 · 손님안내 및 민원처리 · AFC 설비 장애발생 응급조치 등 |

2. 응시자격

가. 응시연령 : 면접시험일(2018.12.4. 예정 기준)

- 시설관리원(청소, 전기, 기계), 승강대관리원, 버스정비원 : 18세 이상(2000.12.31. 이전 출생자) 60세 미만인 자
 - 콜택시운전원 : 20세 이상(1998.12.31. 이전 출생자) 60세 미만인 자
 - 버스관리원(운전·노선), CNG충전원 : 20세 이상(1998.12.31. 이전 출생자) 63세 미만인 자
 - 의정부관리원(운영요원) : 20세 이상(1998.12.31. 이전 출생자) 65세 미만인 자
- ※ 의정부관리원(운영요원)의 경우 기간제업무직으로 임용되며(계약기간 : 임용일 ~ 2019.9.30.) 우리공사와 의정부 市와의 계약기간 종료시(중도해지 포함) 계약해지(당연퇴직) 조건임. 단, 계약기간 연장시 근로계약 연장 가능함.

나. 학력 및 성별 : 제한 없음

다. 거주지 제한 및 근무지

| 분 야 | 거주지 제한 | 근무지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· 시설관리원(청소, 전기, 기계) · 콜택시운전원-A형 · 버스관리원(운전, 노선) · 승강대관리원 · 버스정비원 · CNG충전원 |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| 인천광역시 |
| · 콜택시운전원-B형 |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| 강화군 |
| · 의정부관리원(운영요원) | 공고일 현재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| 경기도 의정부시 |

※ 콜택시운전원(B형)은 강화군 전담이며, 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 타 지역으로 근무지 이동이 불가함

라. 병 역 :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

- 현재 복무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일정에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(2018.12.6. 예정) 전일까지 전역예정인 자

마. 응시결격사유 : 인천교통공사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(면접시험일 기준)

※ 의정부경전철 관리원(운영요원)의 경우 철도안전법 제11조,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 제1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
【인천교통공사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 제11조(결격사유)】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

【철도안전법 제11조(운전면허의 결격사유)】

1. 19세 미만인 사람
2.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3.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(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「화학물질 관리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4.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,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
5.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기간중인 사람

바. 채용신체검사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

- 시설관리원(청소, 전기, 기계), 콜택시운전원-A형, B형, 버스관리원, 승강대관리원, 버스정비원, CNG충전원 :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
- 의정부관리원(운영요원) : 철도안전법(철도안전법 시행규칙)의 신체검사 관련규정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

사. 야간 및 휴일근로 가능자

- 임용후보자 등록시 “야간(22:00~익일06:00) 및 휴일근로 동의서” 를 제출 하여야 임용이 가능합니다.

아. 채용분야별 세부자격기준

| 구 분 | | 자 격 요 건 |
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|
| 시설 관리원 (청소) | A형 |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. 취업지원대상자 2. 다문화가족 3. 기초생활수급자 4. 한부모가족 5. 북한이탈주민 |
| | B형 | 자격조건 없음 |
| 시설관리원(전기) | |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 전기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(기능사 이상) 소지자 |
| 시설관리원(기계) | |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직무분야 중 기계, 재료분야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(기능사 이상) 소지자 |
| 콜택시 운전원 | AB형 |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.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약자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교통약자 운송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2.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“특별교통수단”에 해당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※ “특별교통수단”이라 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 3.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- 제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-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-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- 택시운전자격증(인천)을 취득한 자 |
| 버스관리원 (운전·노선) | |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. 자동차대형면허를 3년 이상 보유하고 버스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.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자(기간 중 운전자격이 정지된 자 및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자 제외) 3. 만20세 이상으로 버스운전자격증 소지자 4. 관련 법규에 의한 운전정밀검사에 합격한 자 5. CNG교육(도시가스사용자동차운전자 교육) 이수자 |
| 승강대관리원 | | 제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|
| 버스정비원 | |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 자동차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(기능사 이상) 소지자 |
| CNG충전원 | |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.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 안전관리분야 중 가스분야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(기능사 이상) 소지자 2. 가스분야 일반시설안전관리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|
| 의정부관리원 (운영요원) | |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.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2.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이상 소지자 |

※ 세부자격기준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하며, 인·적성시험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.

3. 전형일정 및 합격자 결정방법

가. 전형일정 ⇒ 블라인드 채용 방식

| 구 분 | 내 용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
|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| . 일 시 : 2018. 11. 22.(목) . 장 소 :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내 (알림마당, 채용정보) | |
| 인·적성시험 | . 일 시 : 2018. 11. 24.(토) . 대 상 :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| 장소는 추후공고 |
| 실기시험 | . 일 시 : 추후 공고 . 대 상 : 인·적성시험 합격자 (콜택시운전원, 버스관리원(운전·노선), 승강대관리원, 의정부관리원(운영요원)에 한함) | 장소는 추후공고 |
| 면접시험 | . 일 시 : 2018. 12. 4.(화) . 대 상 : 인·적성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| 장소는 추후공고 |
| 최종 합격자 발표 | . 일 시 : 2018. 12. 6.(목) . 장 소 :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내 (알림마당, 채용정보) | |

※ 위 일정은 우리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이전 단계 시험 불합격자는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※ 면접시험 합격자라도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채용이 불가합니다.

나. 합격자 결정방법

- 서류심사 : 응시자격 적합여부만 심사

- 인·적성시험

· 시험내용

: 시설관리원(청소, 전기, 기계), 승강대관리원, 버스정비원, CNG충전원, 의정부관리원(운영요원)은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인성 측정(근면성, 책임감 등)

: 콜택시운전원, 버스관리원(운전·노선)은 인성검사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적성 검사를 추가

※ 인·적성시험은 필기시험(인·적성검사)으로 진행

· 응시대상 : 서류심사 합격자

· 합격인원 : **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**

· 합격자 결정방법

- ▶ 인·적성평균 40점 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
- ▶ 동점자가 발생하여 인성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전원 합격 처리
- ▶ 미응시자, 부정응시자 등으로 인해 합격자가 2배수 미만인 경우에도 합격자로만 다음 전형 진행

- 실기시험

| 실기시험 대상 | 실기시험방법 | 실기시험내용 | 합격자선정 |
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콜택시운전원 (A,B형) | 도로주행 시험 |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코스 | 시험장 기준 적용 도로주행시험 70점 이상자로 휠체어리프트 승하차시험 적합 판정자 |
| | 휠체어 승하차 시험 | 휠체어 승하차 연속 2회 실시 | |
| · 버스관리원 (운전·노선), · 승강대관리원 · 의정부관리원 (운영요원) | 도로주행시험 |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코스 | 도로주행시험 70점 이상자 (시험장 기준 적용) |

※ 콜택시운전원은 장애인콜택시, 버스관리원(운전·노선)은 버스, 승강대관리원은 트럭, 의정부관리원(운영요원)은 트럭 및 승용차 운전 가능자

- 면접시험

- 시험내용 : 집단 구술면접
 - ▶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
 - ▶ 평정요소 : 4개 요소

| 합 계 | 공기업 직원의 덕목 | 일반·전문지식, 응용능력 | 창의성, 논리성, 발표력 | 사회성, 발전가능성, 리더십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100점 | 25점 | 25점 | 25점 | 25점 |

- 응시대상
 - ▶ 시설관리원(청소, 전기, 기계), 버스정비원, CNG충전원 → 인·적성시험을 합격한 자
 - ▶ 콜택시운전원, 버스관리원(운전·노선), 승강대관리원, 의정부관리원(운영요원) → 인·적성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
- 합격자 결정방법

| |
|--|
| ▶ 면접결과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가 만점의 50% 이상인 자중 득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(면접시험 점수만으로 최종합격자 결정) |
| ▶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평정항목 중 어느 하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만점의 20% 이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|

4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응시원서 교부

- 교부기간 : 2018. 10. 31.(수) ~ 11. 20.(화)
- 교부방법 :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(알림마당/채용정보) 또는 인천교통공사 총무인사팀

나. 응시원서 접수 및 장소

- 접수기간 : 2018. 11. 14.(수) ~ 11. 20.(화) 09:00 ~ 18:00
 - 방문접수에 한하며, 대리인 접수 가능
 - 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, 휴게시간(12:00 ~ 13:00) 접수 제외
- 접수장소 : 인천교통공사 본사 4층 총무인사팀

5. 제출서류

가. 응시원서 접수시(모든 응시자) 제출서류

- 입사지원서, 청렴이행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 - ※ 입사지원서는 반드시 **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**하고, **응시자격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,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**

나. 인·적성시험시(서류전형 합격자) 제출서류

| 구 분 | | 제 출 서 류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|
| 공 통 사 항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민등록 초본(병역사항 및 현주소지, 전입일 포함) 1부 ·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 ·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(무경력자 제외) 1부 · 경력증명서(무경력자 제외) 1부 ※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회사 경력증명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기재사실이 확인된 경력만 인정 |
| 시설관리원 (청소) | A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취업지원대상자 :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· 다문화가족 :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· 기초생활수급자 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·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·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 증명서 |
| | B형 | · 공통사항 서류 |
| 시설관리원(전기) | | · 해당 자격증 사본 1부(원본지참) |
| 시설관리원(기계) | | · 해당 자격증 사본 1부(원본지참) |
| 콜택시 운전원 (A,B형)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(원본지참) ·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(원본지참) · 운전경력증명서 1부 ※ 운전경력(사고경력)은 최근 10년, 법규위반은 최근 3년 기준 · 운전적성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※ 유효기간(3년) 이내인 경우 인정되며, 유효기간(3년) 경과된 경우 재발급하여 제출 · 경력증명서,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1부 |

| 구 분 | 제 출 서 류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버스관리원 (운전·노선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(원본지참) . 운전경력증명서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운전경력(사고경력), 법규위반 등 전체경력으로 발급 제출. ⇒ 자동차운전 대형 면허 발급일자 기재 필수 . 버스운전자격증 사본 1부(원본지참) . CNG교육 이수증 사본 1부(원본지참) . 운전적성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유효기간(3년) 이내인 경우 인정되며, 유효기간(3년) 경과된 경우 재발급하여 제출 . 경력증명서,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각 1부. |
| 버스정비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 해당 자격증 사본 1부(원본지참) |
| 승강대관리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(원본지참) . 운전경력증명서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운전경력(사고경력)은 최근 10년, 법규위반은 최근 3년 기준 |
| CNG충전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 해당 자격증 사본 1부(원본지참) . 가스분야 일반시설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증 사본 1부(원본지참) |
| 의정부관리원 (운영요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. 해당 자격증 사본 1부(원본지참) .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(원본지참) . 운전경력증명서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운전경력(사고경력)은 최근 10년, 법규위반은 최근 3년 기준 |

※ 위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(원본지참)을 제외하고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
 ※ **제출서류 자격요건은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(인·적성시험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)**

6.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적용

- 가. 가산대상 : 국가보훈처(지방보훈지청)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
- 나. 가산방법
- 인·적성시험, 실기시험, 면접시험에 적용
 - 각 시험 만점의 40% 이상 득점자에게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
 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7. 유의사항

- 가. 1인 1개 채용분야만 지원 가능합니다.(복수지원 불가)
- 나.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- 다. 임용된 이후라도 기재사실 허위 및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라. **채용분야별 임용시기는 다를 수 있으며, 임용은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, 2019년 1월 기준 1년 이내 정년도래자 순으로 우선임용하고, 나머지 임용후보자는 면접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임용하며,** 임용 후 공사의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지원자 본인이 응시한 분야와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.
- ※ 임용후보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 공고일로부터 2년임**
- 마. 임용후보자 미등록 및 결격사유로 합격이 취소된 경우 면접시험 점수 만점의 50%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운영합니다.
(임용후보자 등록일 까지로 한정)
- 바. 해당 채용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사. 보수 및 복무는 우리공사 사규에 의합니다.
- 아.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4일에서 180일 이내에 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본인확인 후 반환합니다.
- 자.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 7일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.
- 차.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- 채용공고 | : 총무인사팀 | ☎ 032-451-2074 |
| - 시설관리원(청소) | : 1호선역무센터 | ☎ 032-451-3656 |
| - 시설관리원(전기) | : 운연기지사업소 | ☎ 032-451-4406 |
| - 시설관리원(기계) | : 굴현기지사업소 | ☎ 032-451-3816 |
| - 콜택시운전원 | : 교통복지팀 | ☎ 032-437-0494 |
| - 버스관리원(운전,노선), 버스정비원 | : 신교통운영팀 | ☎ 070-4236-5567 |
| - 승강대관리원 | : 승강대관리팀 | ☎ 070-4550-1521 |
| - CNG충전원 | : 버스운영팀 | ☎ 032-851-2110 |
| - 의정부관리원(운영요원) | : 의정부관제팀 | ☎ 032-820-1024 |

입 사 지 원 서

1. 인적사항

| | | | |
|-------|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원분야 | | 접수번호 | |
| 성 명 | (한 글) | | |
| 현 주 소 | (주 소) | | (전입일) |
| 연 락 처 | (휴대폰) | 이메일 주소 | |
| | (비상연락처) | 가점항목 | <input type="checkbox"/> 보훈대상 |
| 병역사항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필 <input type="checkbox"/> 미필 <input type="checkbox"/> 면제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| | |

2. 교육사항 (지원분야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기재)

| 과 목 명 | 주 요 내 용 |
|---|-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학교교육 <input type="checkbox"/> 직업훈련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학교교육 <input type="checkbox"/> 직업훈련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학교교육 <input type="checkbox"/> 직업훈련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| |

3. 자격사항 (지원분야 관련 기술/전문자격, 국가공인 민간자격 기재)

- 세부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증명서 기재

| 자격증명 | 발급기관 | 취득일자 | 자격증명 | 발급기관 | 취득일자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
4. 경험 혹은 경력사항 (지원분야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 기재)

| 과 목 명 | 소속조직 | 역 할 | 활동기간 | 활동내용 |
|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경험 <input type="checkbox"/> 경력 | | |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경험 <input type="checkbox"/> 경력 | | |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경험 <input type="checkbox"/> 경력 | | | | |

5. 자기소개서

5-1. 지원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보유 역량

5-2. 지원분야와 관련된 경력 및 경험사항

5-3. 입사 후 계획

※ 출신지역, 가족관계, 학력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

지원서상의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며, 차후 지원서상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어 합격 또는 입사가 취소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작성일 2018년 월 일 / 지원자

(서 명)

청 럽 이 행 서 약 서

본인은 청 럽 서 약 제 시 행 에 적 극 동 참 하 고 귀 공 사 가 주 관 하 는 【업 무 직 공 개 경 쟁 채 용】 에 응 시 하 며 아 래 각 호 의 청 럽 서 약 조 건 을 준 수 할 것 이 며, 이 를 위 반 할 때 에 는 합 격 이 취 소 하 거 나 계 약 을 해 지 하 는 등 의 불 이 익 을 감 수 하 고, 이 에 민·형 사 상 이 의 를 제 기 하 지 않 을 것 임 을 약 정 합 니 다.

서 약 내 용

1. 금 품·향 응 등 을 요 구 또 는 약 속 하 거 나 수 수(授 受)하 지 않 을 것 이 며, 관 계 직 원 에 게 금 품, 향 응 등 을 제 공 하 여 「임 직 원 행 동 강 령」 제 5 조 및 제 8 조 의 사 유 가 발 생 한 때 에 는 합 격 취 소 처 분 에 이 의 를 제 기 하 지 않 겠 습 니 다.
2. 공 정 한 직 무 수 행 을 방 해 하 는 알 선·청 탁 을 통 하 여 시 험 과 관 련 된 특 정 정 보 의 제 공 을 요 구 하 거 나 받 는 행 위 를 하 지 않 겠 습 니 다.
3. 공 정 한 직 무 수 행 을 방 해 하 는 알 선·청 탁·부 정 행 위 등 적 발 시 합 격 의 취 소 와 민·형 사 상 의 책 임 에 대 하 여 어 떠 한 이 의 도 제 기 하 지 않 겠 습 니 다.

2018년 월 일

서 약 자 :

(서 명)

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

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공지

1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2.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응시자가 인천교통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인천교통공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3.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(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)를 작성하여 인천교통공사로 팩스(032-451-2079)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
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※ 방문신청 시에는 본인확인 후 채용서류를 즉시 반환합니다.
4. 인천교통공사는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까지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

붙임 5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|
| 접수번호 | | 접수일자 |
| 청구인 | 성명 | 수험번호 |
| 주 소 | | |
| 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 | | |
| 반환청구 서류 | | |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